

사회봉사단 운영 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7.3.1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항공대 사회봉사단 운영 규정[전부개정2017.3.1]

제1조 (명칭) 봉사단의 명칭은 “한국항공대학교 사회봉사단” (이하 “항사단” 으로 한다.)이라 칭한다.

제2조 (목적) 항사단은 본 대학의 교육이념인 ‘인격도야(人格陶冶)’, 진리탐구(眞理探究) ‘, 인화협동(人和協同) ‘을 구현하고 지·덕·체를 겸비한 봉사정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대학 구성원들의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고 계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3조 (조직) ① 항사단 총재는 총장으로 하며, 학생봉사단 단장은 학생처장으로 교직원봉사단 단장은 사무처장으로 임명한다.

② 봉사단의 각 구성 주체별로 학생봉사단 및 교직원봉사단을 둔다.

③ 봉사단의 행정지원 및 업무추진을 위해 봉사단 사무국을 둔다. 사무국에는 국장 및 전담직원을 임명한다.

제4조 (업무) 항사단 사무국 및 봉사단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.

① 봉사단 사무국

1. 사회봉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봉사단별 연간 봉사계획 심의 및 봉사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
3. 항사단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
4. 사회봉사 장학생 선발 및 포상에 관한 사항
5. 국내외 봉사활동 파견 및 지원에 관한 사항
6. 기타 사회봉사 운영에 관한 사항

② 학생, 교직원 봉사단

1. 봉사단별 연간 봉사계획안 수립·보고 및 운영
2. 봉사단별 봉사실적 분석 및 보고
3. 기타 봉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

제5조 (학점 인정) ① 학생의 사회봉사활동 실천사항은 학칙 시행세칙 제10조 11항에 의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② 해당 학기에 사회봉사 교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이 학점 취득을 위해서는 34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확인서를 교양학과에 제출해야 한다.

제6조 (포상) ① 학생 및 교직원 봉사단 단원으로서 재학 및 재직 중 사회봉사로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포상 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1. 이 규정 이외의 봉사단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지침으로 따로 정한다.
2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6일 부터 시행한다. 단, 2013년 4월 18일부터 적용한다.
3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